

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0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 18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기획관리실 소관사무에 녹색성장 총괄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에 청사 문화공간 업무를 신설함(안 제6조 및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관련부서 합의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9. 6. 5. ~ 6. 15. / 접수의견 2건 반영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녹색성장 총괄, 균형발전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제5호중 “기업·기관·투자유치”를 “기업·투자유치”로 한다.

제9조제7호중 “및 청사관리”를 “, 청사관리 및 청사문화공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창조도시 기획,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10. (생략)</p> <p>제7조(경제과학국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업·기관·투자유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제9조(자치행정국)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회계·계약·계약심사, 물품(차량 포함)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녹색성장 총괄, 균형발전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경제과학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기업·투자유치</u>-----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자치행정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, <u>청사관리 및 청사문화공간</u>----</p>

행정기구설치조례(안)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

제 출 자 (부서)	의견접수 내용	검토결과
경제정책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	○통상지원 및 WTA지원업무를 경제과학국에 존치	○통상 및 WTA 관련업무는 기업 지원과 연계성이 많은 업무로 현행대로 유지 “반영”
경제정책과	○균형발전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조정	○균형발전 업무는 시 전체 사무의 총괄·통합·조정이 필요하므로 기획관리실로 이관 “반영”